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30 선고 2015가합550736 판결 [주식매매대금청구의 소]

전 문

원고일본국인 A

피고B 주식회사

변론 종결2016. 6. 9.

판결 선고2016. 6.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일본인으로서 2005. 9.경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의 주식을 보유하던 자이고, 피고는 쇼핑센터(백화점)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C은 골프장 및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을 목적으로 1989. 12.경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5. 9. 5.경 피고, C(당시 대표이사 D)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C의 발행주식 56,400주(지분율 47%,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 및 C에 대한 대여금 채권 등 C에 대한 원고의 권리 일체를 매매대금 35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주식 양수·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한테서 계약금 30억 원을 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 중 41,400주(지분 34.5%)의 주권을 교부하였다.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은 다음 기재와 같다.

주식 양수, 양도 계약서

제4조 계약금의 지급 및 주식의 양수, 양도

1. 계약금 30억 원의 지급

이 사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원고는 제6조에 기재한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하기로 하며,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C의 주식 41,400주(현재 지분율 34.5%)를 피고에게 명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30억 원을 지급한다.

제5조 잔금의 지급

원고가 이 사건 계약상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한 후 다음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원고에게 잔금 5억 원을 지급한다(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C에 대여하여 C이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1. 원고가 명도하지 않은 주식 15,000주(현재 지분율 12.5%)를 피고에게 명도한다.
2. 현재 C의 대표이사 D가 C의 자산, 부채, 주주권 등에 관한 소송과 분쟁사항을 모두 해결하고, C의 채무를 인수하거나 상환함으로써 C의 채무를 전부 해결완료하도록 적극 협조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될 무렵, C의 전임 대표이사이자 주주라고 주장하는 E과 당시 대표이사 D 사이에 C의 경영권에 관한 분쟁이 있었는데, 가장 마지막으로 진행 중이던 분쟁은 E이 C을 상대로 제기한 2015. 1. 21.자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결의 부존재확인 소(의정부지방법원 2005가합777)였다. 이에 피고는 위 소송 등 C의 주주 사이에 경영권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적 분쟁이 종결되면 매매대금 잔금 5억 원(이하 '이 사건 잔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계약 제5조를 규정하였다.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E의 C에 대한 위 청구는 기각되었고, 이에 대한 E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E과 D 사이의 분쟁은 2010. 11. 25. 종결되었고, 이 사건 주식 중 잔여 15,000주는 C에서 보유하고 있어 즉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이로써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잔금 지급 조건이 성취되었는데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잔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 중 15,000주를 인도하지 않았고, F가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합13399호 C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가 아직 종결되지 않았으며, C 소유의 토지에 집행된 E, G 명의의 가압류가 해제되지 않고 있다. 또한, C 내부적으로 E이 설치한 묘지를 이장하는 문제, C이 H, I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과정에서 부과된 과징금을 납부하는 문제, E에 대한 투자금이 회수되지 않고 있는 문제 등이 있다. 한편 D는 2015. 10.경 피고와 별개의 주식매매 및 경영권 양수, 양도계약(을 제1호증)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 따라 D는 이 사건 주식 이외에도 D, J, E의 소유주식 전체를 피고에게 양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위 의무를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았고, 심지어 E 소유의 주식은 경매로 제3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이 사건 계약 제5조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 중 15,000주를 인도하고, C의 자산, 부채, 주주권 등에 관한 소송과 분쟁사항이 모두 해결되고, D가 C의 채무를 인수하거나 상환함으로써 C의 채무가 전부 해결된 이후에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데, 위와 같이 C의 주주권 등에 관한 분쟁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계약 제5조에서 정한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가. 이 사건 계약 제5조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상의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한 후 제1, 2항의 사항을 이행한 경우 원고에게 이 사건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항을 해결할 것을 선이행 조건으로 이 사건 잔금지급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인도하지 않은 주식 15,000주(이하 '이 사건 15,000주'라고 한다)를 피고에게 인도하고(제1항), D가 C의 자산, 부채, 주주권 등에 관한 소송과 분쟁사항을 모두 해결하고, C의 채무를 인수하거나 상환함으로써 C의 채무를 전부 해결완료하도록 적극 협조(제2항)하지 않은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먼저,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15,000주를 인도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C의 대표이사인 D가 이 사건 15,000주를 보관하고 있으므로 언제든지 피고가 이를 양도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15,000주를 C의 대표이사인 D에게 보관하여 두었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는 2016. 2.경 C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1항의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나아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확인되는 의정부지방법원 2007. 10. 19. 선고 2005가합77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 9. 11. 선고 2008나2403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다78788 판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15,000주를 C 혹은 D로부터 언제든지 인도받을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영학

판사김선희

판사정지원